

3.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사죄광고 청구

가. 정정보도

(1) 개 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6조),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⁴⁴⁰⁾

44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2)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⁴⁴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²⁾

(3) 청구취지 기재례

☐ 정정보도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44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44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 정정보도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신문 제1면 하단부 광고지면에 가로 37cm,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특호 고딕활자로 우측단 중앙에 세로로 “○○지구 ○○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은 4호 고딕활자로 그 좌측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원고의 성명은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사의 재반론권 허용 여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론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주지법 1994.6.16. 선고 94카합27 판결)

☐ 정정보도등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방송사에게 1,000,000원, 원고 김철수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인터넷신문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게재되는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신문’ 메인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 정정보도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 텔레비전의 21:00 뉴스 프로그램 「○○ 뉴스」의 끝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참조판례]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

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 정정보도등 청구

1. 피고 ○○재단법인은 ① 주위적으로,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 제5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월간○○’의 그것과 같이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 제5면에 상자기사로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를 ‘월간○○’의 그것과 같이 하여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정정보도등 청구

1. 피고 ABC뉴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ABC인터넷뉴스 (<http://www.abcinews.co.kr>)에 24시간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ABC뉴스가 위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기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과 판단 기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6] 갑, 을 등의 제보로 기자 병이 정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 정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갑·을 등, 병, 발행인 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무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정이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정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는 인터넷 뉴스의 발행인 겸 병의 사용자로서, 병은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갑, 을 등은 제보자로서 각각 정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 확정)

☐ 정정보도등 청구

1. 가. (1) 피고 ○○일보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 제1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 (2) 만약 피고 ○○일보가 위 (1)항의 기간 내에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정정보도등 청구

1. 피고 ABC뉴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ABC인터넷뉴스 (<http://www.abcinews.co.kr>) 첫 화면 중앙 중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제목은 20급 명조체로, 내용은 10급 명조체 활자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고 ABC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정정보도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될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보의 7면 중앙부분에 세로 8단, 가로 약 4.5cm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인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 4단에 걸쳐, 정정보도의 내용 및 원고의 이름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중에는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818 판결)

☐ 정정보도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KBC뉴스광장'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씨 크기로, 프로그램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두 줄로 "소의 회사와 대표이사 원고는 ○○리조트사기분양과 관계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프로그램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후 이행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정정보도등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가. 최초로 방송되는 '○○' 프로그램의 첫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나.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며, 진행자의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계속해서 표시하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http://www.nbc.com/broad/tv/culture/>)의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48시간 동안 게재하라.
2. 만약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에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론보도

(1) 개 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6조),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2) 청구취지 기재례

☐ 반론보도 청구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참조판례]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반론보도청구의 허용 여부 (소극)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

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3]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아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및 심리방법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아는 것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다만,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고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제1심에서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집행된 후의 항소심재판과 같이 위와 같은 기회가 일단 부여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반론보도 청구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21:00 뉴스 프로그램 “○○뉴스○○”의 끝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 반론보도 청구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도래하는 첫 토요일 “9시 뉴스 ○○”시간에 6분간 별지 제1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보도 방송을 하라.

[참조판례] [1] 반론보도청구권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반론보도 내용을 정하는 기준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및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반론보도 청구(간접강제)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사의 ○○생 ○○ 보도 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신청인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 지]

반 론 보 도 문

“교사의 ○○생 ○○” 보도 관련 반론문

199 . . . 자 ○○신문 23면(사회면)에서 “교사가 ○○생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구 ○○학교 아무개 ○○이 여중생을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반론보도 청구

피고는 매주 화요일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방송되는 ‘○○○○○’ 프로그램에서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① 반론보도에 관한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 및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반론보도에 관한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항의 주장으로서, 그 존재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등과 대비되는 것이고, 양자의 구별은 당해 보도나 표현의 진정한 의도, 그것이 공표된 방송의 성격 및 보도경위, 주된 시청자층, 사회 일반의 가치관 및 언어생활상의 의미, 전후의 문맥과 행간에 내포된 의미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조항에서 ‘피해를 받은자’라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② 방송프로그램에서 우암 송시열이 복벌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복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그 방송 내용은 사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고, 위 종중은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고법 199. 2. 4. 선고 98나47919 판결)

다. 사죄광고

☐ 사죄광고 청구(저작인격권 침해)

피고는 엔.비.씨(NBC)텔레비전 채널 중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별지 제2목록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제1 목 록

1. 방송의 내용

- 생략 -

2. 방송방식

위 1항 기재 위 두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되 매 프레임을 30초 간 방송, 1회 모두 1분씩 연속하여 2주에 걸쳐 총 2회 방영한다.

제2 목 록

1. 원고가 구하는 방송의 내용

본 방송국이 198 . . . 19:00 '○세기 강좌'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대학교 ○○○ 교수의 '○○의 길' 강의는 60분 내용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 간의 강의 내용이 삭제된 채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방송국은 법원으로부터 '위 20분 간의 강의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 교수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 개념, 역할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이론가로서의 ○○○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원고가 구하는 방송방식

위 두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되 매 프레임을 45초 간 방송, 1 회 모두 1분 30초의 방송을 연속하여 5주에 걸쳐 총 5회 실시한다. - 이하 생략 -

[참조판례] ①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출연자로서는 제작자측으로부터 방송내용에 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수정편집에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②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60분 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여 40분 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그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방송사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연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

③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헌법상 방송의 자유란 방송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가권력 이외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 제 세력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국민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성원칙과 공정성의무에 의해 구속받는 제도적 자유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체제 아래서 방송의 자유 내지 편성권의 주체는 전파법상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방송법인이고, 방송법인이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을 위한 제권한은 법령상 방송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통괄하는 방송법인의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④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방송법인이 국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방송의 자유(편성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편성권을 행사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내부적 계획을 세운 후 방송사의 소속원이 아닌 제3자와 출연계약을 맺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일방인 방송법인은 그 사법상의 출연계약에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작하고 방송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방송법인이 갖는 편성권이 제3자인 출연자의 저작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방송매체를 관리하는 방송법인은 그 운영 방송채널을 통하여 송출한 내용 전반에 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프로그램의 종류와 제작형태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의 귀속과 부담의 정도는 달라진다. 매체가 단지 타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불과한 순수한 채널 내지 의견의 시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인이 방송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한다거나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 방송법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방송의 매체로서의 전파기능을 저해하고 방송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현된 제3자의 표현내용에 대하여 방송법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 방송사 소속 임·직원의 표현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수정 삭제할 권한이 방송법인의 기관에게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방송국의 경영자인 방송법인은 형사상의

처벌법규에 위반하는 표현내용을 방송하거나 그 방송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실제상의 행위자와 함께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의 당연한 귀결로서 방송법인은 편성과 방송을 행함에 있어서 방송내용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사외의 제3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저명한 인사 등이 스스로 출연하여 일정 주제에 관하여 개인적 소견을 진술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원칙상 제작자 또는 원진술자인 제3자에 귀속되고 매체의 관리자인 방송공사가 위 제3자의 표현행위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즉, 외부의 제3자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법인이 편집제작하여 방송한 진술내용이 예컨대 명예훼손, 음란 또는 내란선동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경우에 이를 전파한 방송법인은 그것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책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방송법인은 그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방송법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⑥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고 특정한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공공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불가결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방송에 부과되는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요청을 법률로써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의 원칙이란 방송법인이 방송할 사항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 존중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의 의견과 이익이 다양함을 전제로 하여 각계각층의 관심사 중 논란되는 현안의 쟁점을 주제로 선택하고 그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의 입장이 실제상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이러한 원칙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편성규범은 방송주체를 수명자로 하여 명령된 규정이어서 방송법인 및 그의 편성권행사를 보조하는 소속 임·직원은 편성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헌법상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방송사 외의 기고자나 참여자와 같은 제3자는 이러한 방송법상의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다.

⑦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방송법인은 여론형성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논란되는 공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뿐 아니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는 공정성 원칙에 따라 사회 내의 찬반입장 또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실제상의 비중에 따라 의견이 표현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정성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수의 견해가 동시에 주장되고 반박됨으로써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고, 반박과 토론이 있을 수 없는 개인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득이 개인주장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려면 여러 입장의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수 인사의 의견을 실제적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또는 시리즈의 형태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다양성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⑧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원상회복 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

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 제764조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95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⑨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

원고가 이른바 만족청구권의 한 형태로서 피고 방송법인이 약정과 달리 원고의 강연내용을 부당히 삭제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권을 침해한 점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내용을 고지할 것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의 양심에 반하여 주관적 의사표명으로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서울고법 1994.9.27. 선고 92나 35846 판결)

☐ 사죄광고 청구(저자의 저작물 공표권 침해)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 활자로 하여 별지 2기재 사죄광고문을, 이 판결송달 후 3일 후 발행되는 ○○일보, ○○일보, ○○일보 15면 및 ○○신문 11면 광고란의 하단에 가로 38cm, 세로 17cm 크기로 제목은 2호, 내용은 3호의 활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게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1]

사 과 문

당사가 발행한 월간잡지 '○○' 199 년 1월호의 44면부터 48면까지 “○○○은 ○○○양을 이렇게 성폭행했다”라는 제목 하에, ○○○씨의 수기인 '고백'의 내용 중 성폭행장면만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게재함으로써 ○○○씨의 위 수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는 바입니다.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변 ○ ○

[별 지 2]

사 죄 광 고 문

폐사는 폐사가 발간하는 월간잡지 ‘○○’ 199 년 신년호에 “○○○은 ○○○양을 이렇게 성폭행했다”라는 제하로 ○○○씨의 ‘고백’을 본인의 허락없이 무단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 ○○○씨는 여성의 성이 노동탄압과 반민주적 억압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성폭행사실을 공개하여 이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권력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인간성을 유린하는 고문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우리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 노동인권향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하, 생략 -

주식회사 ○○일보사(○○발행사)